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

춘천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 인권보호관 임세호

전화 033-240-4401/팩스 0502-193-4374

보도자료

2024. 2. 2.(금)

제 목

아동학대·소년 범죄에 대한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 - 교육감 및 교사 의견 청취 -

- 춘천지방검찰청(검사장 정진우)은 어제(2. 1.) 「교육감 의견 청취 제도」와 「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」의 실효화 및 활성화를 위해 관내 교육청·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「유관기관 간담회」를 개최하였습니다.
- 검찰·교육청·경찰은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여
 - ▲ 교원의 아동학대 범죄 신고시 **정당한 교권행사가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교육감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,**
 - ▲ 소년범 처분시 **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인 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습니다.**
- 춘천지검은 **교육감 및 교사 의견 청취 제도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아동학대·소년 범죄에 대한 충실하고 적절한 처리를 통해** 정당한 교권을 보호하는 한편 소년범을 적절히 선도하고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1

개최 배경

- '23. 9. 25.부터 시행 중인 「교육감 의견 청취 제도」와 '13. 도입된 「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」를 정착시켜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존재하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- 제도의 개요
 - [교육감 의견 청취 제도]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, 수사기관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수사시 정당한 생활지도 해당 여부에 관하여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된 제도
 - ※ 『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』에 의한 교육감 의견 청취 제도는 '24. 3. 28. 시행 예정이나, 교육부-법무부-보건복지부-경찰청 공동전담팀(T/F) 합의로 '23. 9. 25.부터 선 시행 중
 - [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] 소년의 학교폭력·교권침해·마약·도박 등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검사가 소년범 처분을 할 때 담임교사 및 학교생활지도교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제도

2

간담회 개요

- 일시·장소 : 2024. 2. 1.(목) 11:00, 춘천지방검찰청 대회의실
- 참석자 (총 20명)
 - 검찰(5명) : 형사1부장검사, 소년·아동학대 전담검사 및 검찰수사관
 - 교육청(9명) : 강원도교육청 및 4개 교육지원청(춘천·홍천·화천·인제) 장학관·장학사·교권 전담 변호사
 - 경찰(6명) :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및 5개 경찰서(춘천·홍천·화천·양구·인제) 담당자

3

주요 회의 내용

○ [교원의 아동학대] **교육감 의견 청취 제도 관련 회의 내용**

- 교육감 의견 청취 제도의 대상, 업무처리절차 및 운영현황에 대해 관련 기관간 점검·확인하고, 실제 운영상 애로사항을 공유하며, 유관기관이 핫라인을 구축하여 관련 기관간 수시 회의하고, 원활하게 소통하기로 합의함

<교육감 의견 청취 제도>

- **(대상)** 초·중·고등학교 및 유치원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
- **(절차)** 시·군청 및 수사기관,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 정보 공유 → 교육지원청, 신고사항 공유받고 사안 확인 → 교육감,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'교육감 의견서' 제출 → 수사기관, 교육감 의견 적극 참고하여 수사 및 처분
- **교육감 의견서 제출 총 17건**('23. 9. ~ 현재) **현황**
 - ▶ **(학교별)** 초등학교 6건, 중학교 4건, 고등학교 7건
 - ▶ **(학대유형별)** 성적 학대 3건, 정서적 학대 10건, 신체적 학대 2건, 신체적·정서적 학대 2건
 - ▶ **(의견서 결론)** 정당한 생활지도 해당 의견 7건, 의견없음 9건, 판단대상 아님 1건

- 교육청은 수사기관에 교육감 의견(정당한 생활지도 해당 여부)의 의미를 설명하고, 수사시 교권 및 아동의 기본권을 조화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
- 경찰청은 아동학대 신고시부터 원활한 유관기관간 협조 및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함

- 춘천지검은 교사, 학생, 학교·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,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 처분시 **교육감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**하여 아동학대 해당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히 판단하고,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

○ **[소년법]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 관련 회의 내용**

- 소년법 수사 및 처분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전문가인 담임교사 및 학생생활지도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필요성에 대해 각 기관 모두 공감함
- 춘천지검은 소년의 태도, 가정환경, 교우관계 및 보호처분 필요성 등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며, 소년법에 대한 적절하고 실효적인 처분을 위해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함

4 향후 계획

- 검찰, 교육청, 경찰은 구축된 핫라인을 활용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 **교육감 및 교사 의견 청취 제도를 정착**시키고, 교원의 아동학대 및 소년 범죄의 신속하고 적절한 사건 처리를 통해 정당한 교권을 보호하는 한편 소년법을 적절히 선도하고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
- 춘천지검은 향후 관내 중·고등학교에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임 ☑

[별첨] 유관기관 간담회 사진

